

[사 건 명] 행심 2017 - 37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2017. 8.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7. 9.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신보다 훨씬 큰 피해학생을 수차례 괴롭힐 수가 없고, 옆에 있기만 하였으므로 가해학생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학교 ◇학년으로 폭력에 대한 사리분별력 및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이에 고의를 가지고 피해학생을 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사건경위를 보면 2017. 3.경부터 7. 18.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의 학생과 피해학생이 어울려서 노는 상황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때리는 행동을 한 적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학생 측의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라. ☆☆학교 ◇학년인 어린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장난이나 다툼은 담임교사의 지도로 충분히 교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적 의무를 저버리고 졸속으로 학폭위를 개최하여 처분한 재량일탈 및 남용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목격자 진술 청취, CCTV 확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절차를 게을리 하였고,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를 중용하고 합의가 되면 마치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고 종결될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청구인이 학폭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진술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이 을지훈련 관계로 일정이 겹쳐 저녁시간에 예정된 학폭위 회의시간을 앞당겼고, 3명의 학부모가 동시에 들어가 진술하게 하였으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무시하고 들어보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진술서, 피해학생의 진술서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다. 학폭위 회의시간은 청구인의 양해를 구하고 앞당겼고, 진술방법에 관해서도 미리 동의를 구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였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및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2017. 7. 19. ●●●와 피해학생이 부딪힌 후 ●●●가 피해학생을 밀어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와 피해학생 간에 싸움이 벌어졌고, ▷▷▷ 등이 가담하였다.
- 나. 청구인은 “잡아줘”라는 소리에 피해학생을 안아(잡아)주었다.
- 다. 청구인의 담임선생님이 2017. 7. 20. 및 2017. 7. 25.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관련자, 목격자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 라. 피청구인은 가해자들 대표로 합의를 진행 중이던 □□□의 아버지에게 학폭위가 개최되기 6일 전인 2017. 8. 17.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어도 피해사실이 있을 경우 학폭위가 개최된다는 점을 문자로 통보하고, 2017. 8. 21.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폭위 참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문자로 통보하였다.
- 마. 피청구인은 학폭위 회의시간을 앞당기는 점과 3명의 학부모가 동시 참석하는 점에 대해 청구인의 양해를 구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성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중용하고 합의가 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을 것처럼 잘못 안내하여 사실관계에 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하나, 위 인정된 기초사실에 따르면 청

구인 측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청구인 측이 합의를 중용하였다거나 강압적으로 회유,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구인이 학폭위의 출석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모(母)의 교육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의 (母)가 학폭위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母)는 3명의 학부모들이 동시에 학폭위에 참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양해가 있었고, 3명이 동시에 참석한 것일 뿐 각자에게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고 달리 진술을 제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녹취파일의 내용은, 이 사건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여부(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어머니와의 합의에 관한 내용이고, ●●●의 아버지가 위원들에게 위 녹취 내용을 설명하였는바, 녹취파일은 제출받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의 절차 진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

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안은(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안은(잡은) 당시 상황은 ●●●와 피해학생 간의 싸움이 발생하고 ▷▷▷, ♀♀♀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학생이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학생들 중 한명의 “잡아줘”라는 말에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안은(잡은) 행위는, 반가운 마음에 안아주었다거나(청구인의 모(母)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와 같이 진술) 싸움을 말리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이 계속되도록 피해학생을 붙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또한 이 사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재량권 일탈, 남용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

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낮음(1점), 고의성 없음(0점), 반성정도 매우 높음(0점), 화해정도 매우 높음(0점)으로 판단하였고, 합계 2점에 해당하는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지속성과 관련하여 2017. 7. 19. 이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러나 지속성에 관해서 없음(0점)으로 판단하여도, 합계 1점에 해당하여 제1호 서면사과 처분에 해당하는 바,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 타당한 처분이다.

라.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